

# 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496호 2017. 4. 20.(목)

## 훈 령

- 사천시 훈령 제336호 사천시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규정 ----- 2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/ 편집 : 공보감사담당관 / ☎ 831-2217 / FAX 831-6012

# 사 천 시 공 보

제496호(2)

## 훈 령

사천시 훈령 제336호

사천시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2017년 4월 20일

## 사 천 시 장 송 도 근

### 사천시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시정 주요정책 결정과 관련 사천시장의 자문을 위해 두는 사천시 정책특별보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사천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 정책특별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천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
2.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, 이해관계자 및 일반 주민 등의 시정참여 촉진과 의견 수렴
3.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

# 사 천 시 공 보

제496호(3)

**제3조(구성)** 정책특별보좌관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.

**제4조(임기 등)** 정책특별보좌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**제5조(수당 등)** 정책특별보좌관의 자문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6조(자료협조 등 활동지원)** ①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 등은 정책특별보좌관으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정책특별보좌관의 자문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**제7조(비밀누설 금지)** 정책특별보좌관은 자문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.

## 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